

회사가 제공한 자전거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

사건 주제 : 요양불승인처분취소
심 급 : 서울고등법원
선고 일자 : 2012. 8. 16.
사건 번호 : 2012누4816
당사자 : <원고> 원고
<피고> ○○○

25.'는 '2011. 7. 27'의 오기로 보인다)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주 문

-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-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'2011. 7. 25.'를 '2011. 7. 27.'로 경정한다.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3행의 "숙소"를 "회사 숙소"로 고치고, 같은 쪽 제4행의 "출근을 하던 중" 다음에 "내리막길에서"를 추가하며, 같은 쪽 제8행의 "2011. 7. 25."를 "2011. 7. 27."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가 2011. 7. 27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(소장의 '2011. 7.

2. 처분의 적법 여부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사무실 인근의 회사 숙소에서 사업주가 제공·관리하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자전거의 제동장치 고장으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, 이는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·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거나,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여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므로,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.

나. 관계 법령

별지 ‘관계 법령’ 기재와 같다.

다. 인정사실

(1) 원고가 근무하고 있는 ◊◊◊은 ◆◆◆의 협력업체로서 충남 당진군 □□□소재 ◆◆◆ 공장의 울타리 안에 사무실이 있다.

(2) ◊◊◊은 2011. 3. 1. 위 사무실 인근의 ■■■△△△ A동 206호를 원고 명의로 임차한 후, 이를 원고를 포함한 ◊◊◊ 근로자들 중 일부의 숙소로 제공하였다.

(3) 원고의 근무시간은, 통상근무를 할 경우에는 08:30부터 17:30까지이고, 3교대 근무를 할 경우에는 07:00부터 15:00까지(1근)와 15:00부터 23:00까지(2근) 및 23:00부터 다음날 07:00까지(3근)인바,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에 통상근무를 하기 위해 08:30까지 출근해야 했다.

(4) ◊◊◊은 근로자의 현장이동 및 출·퇴근 편의를 위해 자전거를 구입하여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였고,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은 회사 숙소에서 사무실로 출·퇴근할 때 ◊◊◊이 제공한 자전거를 이용하였다.

[인정근거] 갑 제1, 2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, 이 법원의 ▲▲▲에 대한 사실조회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라. 판단

산업재해보상보험법(2007. 12. 14.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. 7. 1.부터 시행된 것, 이하 같다)에서 신설된 제37조는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‘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·퇴근 중 발생한 사고’로 근로자가 부상·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, 같은 법 시행령(2008. 6. 25.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된 것) 제29조는 ‘사업주가 출퇴근용으

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’ 및 ‘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’이라는 요건 모두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를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.

이 사건에서 보건대,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① 사업주인 ◇◇◇은 사무실 인근의 ■■■ △△△ A동 206호를 임차하여 원고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의 숙소로 제공하는 한편, 위 숙소에서 사무실까지의 출·퇴근에 이용하도록 자전거를 구입하여 근로자들에게 제공한 점, ② 원고는 위 숙소에서 사무실로 출·퇴근함에 있어 시간 단축이나 편의성을 위해 ◇◇◇에서 제공한 자전거들을 이용하였는데, 그 자전거들은 원고를 비롯한 특정의 근로자에게 개별적·전속적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 ◇◇◇이 이를 소유하면서 부품의 구입 등 관리까지 해 온 것인 점, ③ 위 숙소에서 ◇◇◇ 사무실까지 출·퇴근함에 있어서는, 시내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우회길이어서 더 불편한 반면, 자전거를 이용하여 ◆◆◆ 담장 옆길을 통과하는 것이 최단거리로서 시간이 단축되었

고,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원고는 위 자전거를 이용하여 위 담장 옆길을 통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인 점, ④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◇◇◇에서 제공한 위 자전거의 제동장치 고장으로 인하여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일 수 없어 ◆◆◆ 담장을 충돌하게 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,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‘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·퇴근 중 발생한 사고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.

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,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,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‘2011. 7. 25.’는 ‘2011. 7. 27.’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관계 법령

▣ 산업재해보상보험법((2007. 12. 14.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. 7. 1.부터 시행된 것)

제37조 (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)

-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·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. 다만,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업무상 사고

- 나.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
- 다.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 · 퇴근 중 발생한 사고
-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(2008. 6.

25.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된 것)

제28조(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)

- 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, 장비 또는 차량 등(이하 이 조에서 "시설물등"이라 한다)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

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.

-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 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.

제29조 (출퇴근 중의 사고)

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.

1.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
2.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

<출처 : 대법원 홈페이지(www.scourt.go.kr)>